

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☐ 개정이유

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이 실내수영장으로 전환됨에 따라, 수영장 관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영장 관리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☐ 주요내용

충청북도학생회관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 외에 수영장이 소재한 「충청북도.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」를 추가함 (안 제17조 제2항)

☐ 개정근거 : 지방자치법 제135조

☐ 입법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☐ 조례안 : 불 입

☐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 입
- 관계법령발췌서 : 불 입

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학생회관의 수영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에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 제17조(설치) ①(생략) ②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.	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 제17조(설치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단, 학생회관의 수영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에 둔다.

관계법령발췌서

지방자치법

- 제135조 (공공시설)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.
- ③제1項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

- 제3조(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) ①도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.)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
-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청·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청·소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청·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
-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는 사무중 제2청·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청·소의 장에게 위임한다.
- ④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.